

고령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I. 서론
- II.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 군포시를 중심으로
- III. 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 IV.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 V.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고령화사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개선방안

I

서론

■ 고령화사회의 정의

-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 및 영양상태의 호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늘어나 전체인구에서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 많이 쓰이는 고령사회 또는 고령화사회라는 용어는 1950년대 말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약간씩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라는 세 가지 용어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음
 - 고령화사회'는 전 국민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고령사회'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경우를 말함
 -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넘어설 때 '초고령사회'라고 함

■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

- 노인복지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주로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후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주로 네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음
 -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제공하는 소득보장임
 -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보장임
 - 노인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질병에 대한 치료는 물론 요양까지 포함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장임
 -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사회서비스보장임
- 이 중에서 현재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어느 정도 정책방향과 실행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보장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 노인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하위 개념으로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득·의료·보건 서비스 그리고 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념을 논의할 때 노인복지라는 목적과 서비스라는 수단을 함께 포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에는 노인복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 문제영역을 포함 할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천영역에서의 전달체계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은 노인복지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직접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양태에 초점을 두고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과 많은 학자들이 제시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영역을 기초로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제도적 노인복지서비스와 사회적 노인복지서비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시설노인복지서비스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음(표 1 참조)

- 제도적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 소득, 의료와 관련된 것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노후의 경제적 자립 내지 경제적 안정을 돕는 복지서비스가 주요 관심대상임
 - 노인일자리 찾아주기사업, 경로연금지급,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과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로사상의 고취, 노인학대 예방과 같은 일들도 넓게 보면 노인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적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들이 편안하게 기거하고 의료혜택을 받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통한 복지서비스들을 의미함
 - 여기에는 시설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이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준시설을 이용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나뉘어짐
- 시설노인복지서비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주거복지시설로는 양로원과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음
 - 이들 시설들은 실비로 제공하는 것도 있고 유료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들의 의식주 전반에 걸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 노인의료복지시설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어 이 시설에서는 주로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음
 -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같은 시설이 있음
 - 이곳에서 노인들은 자유롭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시설에서는 노인학교를 통한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최근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로서 핵가족화의 보편화현상과 장애를 가진 노인이나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정에서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재가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특히 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여기에는 크게 직접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이들의 가사 지원이나 개인활동 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중간 시설보호를 통해 낮 시간을 이용하거나 단기간의 일시적 도움을 주는 주간보호사업 및 단기보호사업 등이 있음

〈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과 내용

제도적 노인복지서비스	사회적 노인복지서비스	
	시설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	양로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경로연금 지급	노인복지주택	주간보호사업
경로우대 사업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사업
노인학대 예방	노인전문병원	.
.	노인복지관	.
.	경로당	.
.	.	.

II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 군포시를 중심으로

■ 개요

- 군포시의 인구는 현재 약 27만 8천여 명임
 -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2005년에는 16,837명으로 전체인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군포시 노인인구 추이

(단위: 명, %)

연도	총인구(A)	65세 이상 인구(B)	B/A
1996	254,832	10,028	3.9
1997	262,860	10,673	4.1
1998	271,106	11,543	4.3
1999	270,951	12,306	4.5
2000	271,306	13,014	4.8
2001	270,326	13,354	5.0
2002	269,889	14,290	5.3
2003	276,756	15,311	5.5
2005	277,010	16,837	6.1

자료: 군포시 17회 통계연보, 2006

- 군포시 노인인구 구성을 보면 남녀노인이 각각 37.9%, 82.1%로 경기도와 전국에 비해 남자노인의 비율이 약간 낮으며 연령별 구성을 보면 경기도와 전국에 비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임

〈표 3〉 노인인구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군포시	경기도	전국
전체 노인인구		16,837	519,256	3,371,806
노인인구 비율		6.1	7.1	9.1
성별	남자	37.9	38.9	38.2
	여자	62.1	61.1	61.8
연령별	65-69	39.2	41.4	40.8
	70-74	28.0	27.2	27.2
	75-79	17.9	17.6	17.8
	80세 이상	14.9	13.8	14.2

자료: 군포시 제17회 통계연보, 2006

- 한편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단독 및 노인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노인세대, 중증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을 의미하는 군포시 독거노인은 2006년 1월 31일 현재 848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4.96%임

〈표 4〉 군포시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

총인구	65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독거노인	전체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277,807	17,114	6.16	848	4.96

자료: 군포시 내부자료, 2006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이 1개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이용자수는 400~500명임
- 경로당은 8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루 이용자수는 약 5,000명 정도임
- 노인교실은 2개가 있으며 하루 약 160명 정도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음

〈표 5〉 군포시 노인여가 복지시설 (단위: 개, 명)

구분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1	89	2
이용(회원)수	400~500	5,000	160

자료: 군포시 내부자료, 2006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2개 있으며 종사자수는 10명으로 이용정원은 294명임
- 노인주간보호시설은 1개가 있으며 종사자수는 7명으로 이용정원은 20명임
- 노인의 집이 1개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 정원은 80명임

〈표 6〉 재가노인복지시설

(단위: 개, 명)

구분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노인의 집	경로시설
시설수	2	1	1	1
종사자수	10	7	-	-
이용정원	294	20	80	

자료: 군포시 내부자료, 2006

■ 노인복지서비스담당 인력과 조직

- 군포시는 여성가족정책과에 노인복지팀이 있으며 4명의 공무원이 노인종합복지 계획, 노인복지회관 및 시설 관리, 실버인력뱅크 관리, 환경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4명의 공무원은 일반행정직 2명과 사회복지사 2명으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표 7〉 군포시 직급별 담당업무

(2007. 5. 29 현재)

직 급	담 당 업 무
팀장	노인복지업무 총괄
행정6급	노인복지종합계획수립 노인행사추진, 노인복지기금(도·시),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급	노인지회 및 노인대학 관리, 노인복지회관 및 시설 관리, 노인들보미 바우처 관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및 독거노인 관리, 노인복지일반
행정급	일자리사업, 실버인력뱅크 관리,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복지 예산,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회복지급	경로당 신·증축, 환경개선사업, 경로당물품구입, 경로당활성화, 시설입소 관리, 경로연금 및 각종 수당 지급(위생장수, 교통)

▣ 노인복지서비스의 주요 사업

- 군포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크게 노인수당, 저소득독거노인 지원사업, 경로당 지원, 노인일자리아업, 노인복지회관, 노인관련행사, 경로행사, 재가복지사업, 대한노인회지회, 기타사업의 단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각 단위사업별 사업은 다시 세분되어지는데 노인수당은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노인가구월동난방비, 사회복지시설생계비로 구성되어 있음
-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노인위생수단, 고추장담가주기, 김장담가주기, 칠 팔순효도잔치, 노인건강진단 등이 있음
- 경로당지원사업은 경로당운영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명절맞이위문품 지원, 환경개선사업, 물품지원사업, 경로당도우미 등이 있음
- 노인일자리아업은 노인일자리아지원사업, 교육형추가,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운영비, 시니어클럽임차료, 시니어클럽차량 등이 있음
- 노인관련행사사업으로는 어린이날행사, 노인의 날 행사, 노인취호대회, 노인관련행사봉사자봉사 등이 있으며, 경로식당사업으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취사원인건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이 있음
- 재가복지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돌보미 지원, 노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은빛사랑채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음
- 대한노인지회 지원사업으로 수봉노인대학운영, 노인한글반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등이 있으며 이외에 노인복지회관과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군포시의 위와 같은 사업을 제도, 시설,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제도적 노인복지서비스는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사회복지시설생계비,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운영 등이 있음
 - 시설노인복지서비스는 경로당운영난방비,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환경개선사업, 경로당도우미,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이 있음
 -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돌보미지원, 노인실비업소이용료지원, 독거노인도우미파견사업, 은빛사랑채 운영 등이 있음
 - 지역특성사업으로는 노인위생수당, 고추장담가주기, 김장담가주기, 칠팔순효도잔치, 노인건강진단, 어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화대회 등이 있음

〈표 8〉 유형별 군포시 노인복지서비스의 주요 내용

제도적 노인복지 서비스	사회적 노인복지 서비스		지역특성사업
	시설노인복지 서비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노인가구월등난방비 사회복지시설생계비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경로당운영난방비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명절맞이 위문품지원 경로당환경개선사업 경로당물품지원사업 경로당도우미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복지회관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노인돌보미 지원 노인실비업소이용료 지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은빛사랑채 운영	노인위생수당 고추장담가주기 김장담가주기 칠팔순효도잔치 노인건강진단 어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노인회화대회 수봉노인대학 운영 은빛사랑채 운영 노인한글반 운영

▣ 노인복지서비스의 예산

- 군포시의 2007년 노인복지사업 지출예산을 보면 총 8,288,755(천원)임
- 단위사업별로 보면 노인수당이 3,452,82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전체예산의 41.7%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월동난방비), 제9조(경로연금), 제26조(경로우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 저소득독거노인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의 4.8%인 400,47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 지원되고 있음
- 경로당 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의 9.3%인 767,308(천원)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체 예산의 12.1%인 1,006,00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시행령 제17조의 3, 제17조의 4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전체 예산의 8.8%인 728,09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 노인관련행사는 전체 예산의 0.1%인 13,50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 제6조, 제27조(건강진단 등),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제9조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 경로식당은 전체예산의 5.8%인 485,264(천원)으로서,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 재가복지사업은 전체예산의 17.0%인 1,410,168(천원)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의해 지급하고 있음
- 대한노인회지회는 전체예산의 0.3%인 14,32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음

(표 9) 군포시 노인복지사업 예산지출내역(2007)

(단위: 천원)

단위사업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율(%)
예 산 총 계		8,288,755	
노 인 수 당	합 계	3,452,824	41.7
	경로연금	793,053	
	노인교통비	2,440,393	
	노인가구월등년방비	197,778	
	사회복지시설생계비	21,600	
저소득특거노인지원사업	합 계	400,473	4.8
	노인위생수당	362,400	
	고추장담가주기	13,000	
	김장담가주기	16,000	
	칠팔순호도잔치	7,500	
	노인건강진단	1,573	
경로당지원	합 계	767,308	9.3
	경로당운영년방비	201,142	
	사회봉사활동비	234,934	
	명절맞이위문품지원	10,000	
	환경개선사업	100,000	
	물품지원사업	20,000	
	경로당도우미	201,232	
노인일자리사업	합 계	1,006,000	12.1
	노인일자리지원사업	648,000	
	교육형추가	33,000	
	살버인력뱅크	60,000	
	시니어클럽운영비	95,000	
	시니어클럽임차료	150,000	
	시니어클럽 차량	20,000	
노인복지회관	합 계	728,098	8.8
	운영비	728,098	
노인관련행사	합 계	13,500	0.1
	어버이날행사	6,000	
	노인의 날 행사	6,000	
	노인후회대회	1,000	
	노인관련봉사차봉사	500	
경 로 식 당	합 계	485,264	5.8
	경로식당 무료급식	338,480	
	취사원 인건비	33,600	

	영양사 인건비	61,452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51,732	
재가복지사업	합 계	1,410,168	17.0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566,980	
	특수근무수당	52,200	
	노인돌보미 지원	253,000	
	노인실버입소이용료 지원	60,000	
	유급봉사원 확대	120,000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193,488	
	은빛사랑채 설치	120,000	
	은빛사랑채 운영	44,500	
대한노인회 지회	합 계	14,320	0.3
	수봉노인대학 운영	6,000	
	노인한글반 운영	1,920	
	노인일거리마련사업	6,400	
기타	합 계	10,800	0.1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	10,800	

자료: 군포시 내부자료, 2007.

Ⅲ

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 미국

- 미국에서의 노인복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제도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후에 있어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음
- 최근 미국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양로원이나 다른 노인요양시설을 통한 것이기 보다는 재가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한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변화하고 있음

-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과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각 종 연금과 보험의 혜택으로 노인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면서 편안하게 자신의 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유도하고 있음
-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정책이 시설보호서비스 중심에서 재가 또는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와 수요자의 욕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단 장기간의 시설보호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자들(노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많은 노인들이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기 보다는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람
- 미국 농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는 가사지원서비스, 식사배달, 주간 탁노소, 단기보호소, 주택개선 지원 등이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지방정부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지역노인가관(area agencies on aging)이 있어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함
- 구체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장기적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의 지원없이 순수하게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음
 - 지역사회 대안 프로그램(COP: Community Options Program) 이나 지역사회통합 프로그램(CIP: Community Integration Program)은 정부가 후원하는 장기프로그램의 사례이고, 노인을 위한 협동체(coalition),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동료애(elder care partnership), 그리고 구제 프로그램(outreach program)과 같은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민간단체에 의한 것임
- 이러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그들의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노인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민간단체 위주로 전개되는 '노인을 위한 협동체(coalition)'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노인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편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일본

- 일본의 노인복지서비스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정부에 의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게 되었음
- 1963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1973년에 개정되었고 1982년에는 노인보건법이 시행되었음
 - 1980년대 이후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가 확장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지출이 늘어나 중앙정부는 심한 재정압박의 문제에 시달리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개호수발보험의 도입을 추진하여 2000년 4월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음
- 일본은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비율이 낮고 많은 일본인들이 양로원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수발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개호수발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각 종 보험연합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 개호수발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약 1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재원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2006년 3월 현재 65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2,588만 명임
- 일본에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음
- 과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입안은 물론 대상의 선정까지 담당하는 공급이 수요를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다면, 개호수발보험의 도입으로 수요자가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

- 민간부문이 노인복지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더욱이 이전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개호수발보험은 보편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일반 노인들도 신체적·정신적 개호의 필요성에 따라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용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음
- 그러나 개호수발보험으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고 실질적인 서비스에 있어서도 각 지역의 재정상태나 운영의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여 주고 있음
- 개호수발보험은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전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로서 특별양호노인시설, 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등을 통해 개호 또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후자는 비교적 거동이 자유로운 노인들에게 취미와 여가 그리고 문화활동 및 건강지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개별방문서비스,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하여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서비스 인력뿐만 아니라 가족이 서비스를 담당할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는 것임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의 성향이 병원이나 요양시설 보다는 집에서 치료와 여타의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재가노인 복지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일본의 히로시마 현 미쓰기라는 마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의료, 복지, 보건 분야를 한 군데에서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수혜자에게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수요자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지역에서는 의료 업무를 담당해 오던 병원이 관청으로부터 복지와 보건 업무를 이관받아서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병원에서 방문간호사들에 의한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수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평상시에는 이웃 사람들의 자원봉사 활동의 도움을 받기도 함
- 종합적인 의료·복지·보건서비스는 의료보험이나 개호수발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에서 의료·복지·보건서비스의 통합노력은 '지역복지'란 개념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미 1970년대 초에 시도되었으며 최근에는 개호수발보험의 도입으로 노인복지의 사회화와 지역 통합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졌음
- 사회복지관과 같은 시설중심의 노인복지로부터 지역 전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노인들이 재가생활을 하면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일본에서 의료·보건·복지가 연계된 지역복지의 개념이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노인의료비와 복지비 증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억제와 재가서비스를 선호하는 노인들의 선호가 일치한 결과임
-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역복지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함
- 의료·복지·보건의 통합을 전제로 한 지역복지서비스에서 필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노인문제를 전담하고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시민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협의회에 참가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협의회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함

- 지역복지는 지역의 주민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불가능함
 - 재가와 시설복지서비스가 혼합되고, 의료·복지·보건이 통합되는 지역복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또는 전문가집단, 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상호 협조를 해야 하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서비스의 효과는 배가됨

IV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즉,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지역사회 사회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시스템의 수립이 곤란함
 - 민과 민, 관과 관, 민과 관의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며,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과 민간이 노인복지서비스 정책형성에 있어서 파트너로서의 참여보다는 공공기관은 재정지원을 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은 서비스에산을 집행하는 대행자 관계에 가까움
- 지역특성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내용의 미흡함
 -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주민 및 지역 내 노인복지 전문가, 특히 수요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이 없이 행정편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에서의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여측에 따른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정책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자율성이 부족함

- 중앙정부의 업무지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업무를 실시하며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경로당 사업정도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일부 사업의 중복으로 공무원들의 업무과중 및 예산 낭비

● 유사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과중과 예산낭비 발생

-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도움미따권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방문, 3회 전화를 하고 있음
-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질환자,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가구에 따라 매일 또는 주 1~2회 가사간병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사업들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은 물론 예산의 낭비가 발생함

● 노인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 자치단체 및 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계속하여 노인복지관련 업무만 수행하나 행정직 담당공무원은 인사제도에 따라 담당부서를 이동하므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음
- 따라서 노인정책이 노인복지사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노인복지서비스전달에 어려움이 있음

- 동주민센터의 노인복지담당공무원은 경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상담, 연계 업무를 수행하며 전산입력, 매월 생계비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군포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4회 소득재산 상담을 실시하며, 1개 동 당 1,700명 ~2,500명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신규사업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영구임대 아파트 지역의 경우, 동의 사회복지담당 1인당 150세대에서 250세대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100세대를 담당할 때 적정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면, 일부 동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여 개별서비스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시와 보건소의 협력부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발생

-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노인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양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별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업무가 중복 수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예산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서비스 공급의 한계

- 보건소 방문보건팀의 경우, 노인장애인 등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이들에게 제공할 물량의 부족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

●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임

- 노년층의 빈곤이 타 연령층에 비해서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 추세이며 빈곤 노인은 산업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대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경제활동도 과학화·기계화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는 반면 노인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데다 사회에서도 노인의 취업기회 제공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인은 노동시장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

● 일부 계층의 노인만 노인복지혜택을 받고 있음

- 지역전체의 노인 또는 소외계층의 노인에게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속한 일부 몇 명의 노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 일부 경제적·시간적 여유 계층의 노인만 자치단체의 노인복지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전시 행정위주의 노인복지정책 운영임
 - 실질적인 노인복지정책보다는 형식적인 성과위주의 사업추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경로당, 노인봉사대, 노인복지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인들의 의식부재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
 - 일부 노인의 경우, 어르신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련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수혜만을 강하게 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인 및 노인단체 등이 주장하는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실질적인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일부 노인 중에는 법을 악용한 민원인, 또는 차매, 알콜 중독자들이 공공기관을 파손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려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지역 시민운동단체와의 협조체제가 부족함
 - 시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시민운동단체와의 협조 및 공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노인계층의 양극화 심화임
 - 노인 중 부유층과 빈곤층이 있어 전자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제도를 통해 여유로운 여가와 혜택을 받고자 하며 노인관련 단체에 가입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단체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함
 - 반면 상대적 빈곤층 노인은 병들고 능력과 여유 부족으로 행정기관에 의견제시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음

V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 제도적 측면의 발전 방안

①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

-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정책의 큰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함
- 중앙정부 내에 노인복지서비스의 관련 부처 간에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전 계획을 세움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필요한 예산수급계획 등을 마련함
-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함
- 중앙정부는 차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된 노인복지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다음 연도의 협의과정에 이를 반영하며 인센티브제를 도입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노인복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노인 자신과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함

-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권리·의무관계를 법제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함
- 국가의 부담금 및 보조금 우주의 복지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복지정책에 의한 재정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행정이 계획과 시행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의료,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단위 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책임져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제도 및 재가, 시설노인복지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임

③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

-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또는 노인문제 발생 시 공청회 또는 설문서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노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
- 또한 노인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이나 지역방송 그리고 지역의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하여 주민들 특히 노인들에게 투명한 노인복지서비스 행정을 구현함
- 예를 들어, 군포시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욕구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노인들 역시 학력, 과거 직업, 현재의 경제력, 독거노인, 자식과 함께 사는 노인 등 다양각색이므로 농촌지역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④ 자원봉사자의 활성화

-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봉사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함

-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사회적 봉사
로 인한 성취감 등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의 활
용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5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에 주부층을 위주로 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노인 및 청소년
계층층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군포시에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노인들을 위하여 물리치료기, 발마사
지, 자동안마기, 노인쉼터, 국악감상실, 노인을 위한 노래방 등의 시설 설치, 장
기, 바둑, 윗놀이, 노인건강교육,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요가댄스, 건강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함

6 일부 중복사업의 통합 및 폐지

-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
견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음
- 이 모든 서비스제도는 노인과 연관된 유사사업으로서 일선업무담당자에게 업무
부담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통합 또는 조
정이 필요함

7 시와 보건소의 유기적인 협력강화

- 양 기관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내 노인복지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노인
문제 발생 시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내 노인복지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
- 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보건직이나 간호직 등
과의 인사교류도 검토해 볼 만함

■ 운영적 측면의 발전 방안

①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및 창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기적이고 보수가 적은 공익형 일자리나 복지형 일자리보다는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함
- 지역 내 기업이나 아파트 등에서 전체 고용인력 중 65세 이상 노인을 일정 비율 채용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며 이에 부응하는 기업이나 아파트단지 경비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

② 균형있는 서비스의 전달 및 참여유도

- 자치단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되 초기화면에 노인복지서비스정책 창을 설치하도록 함
- 본청이나 동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상담실에 노인복지서비스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노인복지관련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정책을 홍보하도록 함
- 지역의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시, 의식조사 또는 공청회를 통해 노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노인복지관 등에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자치단체에서의 정책결정 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노인들의 노인복지정책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③ 형평성있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도 어느 한 계층에게만 초점을 맞춰 획일화 시키지 말고 다양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 노인은 즐겁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건강이 나쁜 노인에게는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노인에게 맞춤형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함
- 예를들어, 건강이 안 좋아 집에 누워 있는 노인에게는 건강가정도우미가 와서 건강체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최대의 서비스임

④ 시민단체의 참여 유도

- 지역에서 시민단체의 활동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환경, 교육·청소년, 사회복지, 교통, 소비자보호, 행정감시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일부 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순수 시민단체는 별로 없음
- 시민단체들도 노인들을 위해 양로원, 요양원 등과 같은 시설을 방문하여 서로 간의 대화, 함께 놀아주기, 목욕시키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등의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함

⑤ 노인·청소년 간 동일한 공간의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

-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
- 최근 세대간 단절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가능하면 두 기관을 통합하거나 근거리에 설치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
 - 한 공간 또는 근거리에서 노인과 청소년이 만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대 간 어울림을 통해 노인들과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⑥ 민간재가간병단체의 확대

- 지금까지는 지역의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재가노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 향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이와 같은 종교사회단체의 도움만으로는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민간재가간병단체를 크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민간재가간병단체 소속의 간병인은 유료자원봉사자로 하되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⑦ 가정방문 서비스의 확대

- 노인들은 시설에 가서 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리가 멀고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설에 가서 재가서비스를 받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이와 같은 노인들의 정서를 이해하여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⑧ 노인대학 문화의 개선

- 실내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순환레크리에이션 강사를 배치하여 노인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로당 문화에 대한 다른 즐거움을 제공해야 함

내용문의 : 조 석 주 연구위원 (02-3488-7316, csj@krila.re.kr)
이 상 목 수석연구원 (02-3488-7312, sml@krila.re.kr)

「자료 회원」안내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항구적인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4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법률 제3809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당 연구원은 설립이래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인사에게 보급하여 왔습니다. 당 연구원은 유익한 자료를 여러분이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자료회원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자료회원 가입방법

당 연구원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팩스(02-3488-7370)로 전송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자료회원 가입안내)에서 양식을 Down 받아 작성하시고 메일(leeyong@krila.re.kr)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실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은 회비를 입금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기존 회원은 회비 만 납부)

2.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회원구분		회비	자료구독내용	회비납부방법
일반회원	개인회원	30,000원	지방행정연구,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지로납부: 지로용지발송(지로 번호 7630619)
	기관회원	50,000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100,000원	지방행정연구,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집, KRILA FOCUS, 세미나·공청회 초청장 등	은행송금: 국민은행 367-01-0044-581 (예금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관회원	150,000원		

3. 제 출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 지식정보팀

(137-87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3 / F. 02-3488-7370 / E. leeyong@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http://www.krila.re.kr>

「지방행정연구」원고 모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관련 전문학술지인 「지방행정연구」에 게재 할 논문을 모집합니다.

「지방행정연구」는 1986년 7월에 제1호 발간을 시작하여 그 동안 자치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정책분야의 주제에 대한 수준 있는 연구논문들을 게재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관련 분야의 활발한 지식교류를 위한 매체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투고하신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심사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연구지 모집분야 : 자치행정, 지방재정·세제, 지역정책·균형발전

2. 연구지 발간일정 : 연 4회 발간

— 2008년 3월호(통권 제72호), 2008년 6월호(통권 제73호)

— 2008년 9월호(통권 제74호), 2008년 12월호(통권 제75호)

3. 논문접수일정 : 연중 수시접수

4. 논문제출 방식 : E-mail로 제출 (local@krila.re.kr)

5. 논문작성 방식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의

「지방행정연구지 기고안내」 참조

6. 제 출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관리실 연구지원팀

(137-87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2-13

T. 02-3488-7361 / F. 02-3488-7305 / E. local@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http://www.krila.re.kr>